

제321회 임시회
2013. 6. 18.(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18.(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정지숙 의원 외 6인

나. 제출일자 : 2013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6월 12일

-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지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를 포함하며, 현역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변경(안 제1조)

-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변경(안 제2조)

-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명칭변경(안 제5조)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가족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를 포함하며, 현역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도 포함하고, 현역복무의 정의에서 상근예비역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병역명문가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병역명문가가”를 각각 “병역명문가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병역명문가로서”를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p> <p>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p> <p>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p> <p>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신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대) ①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u>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u>가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u>가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p> <p>④ <u>병역명문가</u>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우대) ①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 가족</u>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 가족</u>이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u>병역명문가 가족</u>이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p> <p>④ <u>병역명문가 가족</u>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2.11.21>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10.5.4, 개정 '12.11.21, 단서신설 '12.11.21>
2. “현역복무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10.12, '08.4.16, '12.11.21>
3.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0.5.4, '12.11.21>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12.11.21>